

#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12호
2. 발 의 자 : 김규남 의원(찬성자 21명)
3. 제안일자 : 2022년 8월 29일
4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서울특별시 조례에 문화관광형시장 및 사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“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제8호 신설).
- 나.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제5호 신설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지역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“문화관광형시장”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업을 추가함.

##### 나. “문화관광형시장” 추가의 적절성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통시장특별법”)은 “문화관광형시장”을 “지역의 역사·문화·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거나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시·군·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”로 정의함.
- “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”은 200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“중기부”)의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, 「전통시장특별법」의 개정(2013.5.28.)으로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정의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법정 사업으로 전환됨.
  -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‘첫걸음기반 조성 시장’을 선정한 후, 성과평가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등의 본사업<sup>1)</sup>으로 도약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됨.

1) 종전에 특성화시장 본사업에 포함되었던 글로벌명품시장 유형과 지역선도형시장 유형은 사업이 종료되었고, 2022년부터 비대면 거래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통시장 유형이 신설됨.

- 서울시는 현재 첫걸음기반조성 대상 시장 4개<sup>2)</sup>, 문화관광형시장 8개<sup>3)</sup>, 디지털전통시장 6개<sup>4)</sup>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음.

**<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용 >**

사업명	사업 내용	총 사업비	기간
첫걸음기반조성	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향후 디지털전통시장, 문화관광형시장 등의 2단계 사업으로 유도	3억원 內	1년
디지털전통시장	전자상거래 사이트 온라인 입점 지원,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배달사업 등 비대면 거래역량 강화(2022년 신설)	6억원 內	2년
문화관광형시장	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	10억원 內	

※ 매칭비율 : 국비 50%, 지방비 50%(시비 50~70%, 구비 30~50%), 구비는 자치구 재정력(기준재정 수요충족도)에 따라 차등산정

- 개정안은 “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”을 “「전통시장특별법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업”으로 정의하고, 이를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.

<p>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 제13조(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의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 1.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 2.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 3.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·행사·문화공연,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 4. 시장·상점가와 지역 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·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 5.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 6.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,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</p>
---

- 2) 강북구 강북종합시장, 관악구 인현시장, 광진구 화양제일골목시장, 종로구 통인시장
- 3) 광진구 자양시장, 노원구 공릉도깨비시장, 서대문구 영천시장, 양천구 신영시장, 양천구 목사랑시장, 은평구 연서시장,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, 용산구 용문시장
- 4) 강북구 수유시장, 동작구 성대시장, 금천구 남문시장, 서대문구 포방터시장, 광진구 중곡제일시장, 강동구 암사종합시장

- 그러나 「전통시장특별법」에 따르면, “문화관광형시장”에 대한 신청 권한은 자치구에, 지정 권한은 중기부에 부여하고 있고, 서울시는 매칭시비 편성과 사업협의체 참여 외에 직접적인 권한이 부재함.
  - 중기부는 ▶사업 대상(시장) 선정, ▶성과관리, ▶사업계획 승인을 담당하고, 서울시는 ▶매칭시비 부담, ▶사업협의체 참여를, 자치구는 ▶세부사업 추진, ▶매칭구비 부담을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▶사업 정산, ▶성과평가, ▶세부사업 관리를 각각 수행함.
- 또한 국-시-구 간 재정분담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원 사업을 신설하더라도 국비와 자치구 사업비를 연동하여 증액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.
- 따라서 「전통시장특별법」과는 별도로 “서울형 문화관광형시장”에 대한 정의와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정부 공모에 지원 예정이거나 선정에 탈락된 시장에 컨설팅을 시행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.
- 다만, 이 경우에도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우려가 있고,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실행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<sup>5)</sup>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범준	02-2180-8056

5) 중기부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실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고 있음.